

의안번호	제3027호
의결일	2025. . .
연월일	(제회)

의결사항	
------	--

##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5. 11. 14.

#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27호
------------	--------

제출연월일: 2025. 11. 14.  
제 출 자: 고 성 군 수

## 1. 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에 따라 고성군 관내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건강하고 자립이 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안 제4조, 안 제5조)
- 다.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 구성·운영(안 제6조, 안 제7조)
- 라.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안 제8조, 안 제9조)
- 마.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2) 「사회보장기본법」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4) 「지역보건법」
- 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6) 「고성군 포상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지원과-39445(2025. 10. 16.)호]

라. 기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5-1596호

가) 예고기간: 2025. 10. 10. ~ 2025. 10. 30.(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본문: 붙임과 같음

##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 ·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다.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

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성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 3.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통합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간호·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지원 사업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사업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사업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 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사업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합지원 사업
-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

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회의 구성 · 운영)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 ·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군 내의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장, 국민연금공단 통영고성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지원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등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정책 수립·홍보 및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2.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유형 분석
3. 제10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조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조사기준 개발
4. 제12조의 종합판정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

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 · 단기 공급대책
  3. 인력 · 조직 ·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고성군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분장사무 등)** ① 본청 담당관·추진단 · 과 및 농업기술센터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과 같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② 본청 담당관·추진단 ·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세부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